발간등록번호 31-9735045-001344-14

NARS 현안보고서 제274호 2015. 11. 2.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리스 및 렌탈 용어와 소비자 보호 관련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현안보고서 Vol. 274

리스 및 렌탈 용어와 소비자 보호 관련 쟁점

홍정아(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최지현(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2015. 11. 2.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동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주제 선정	2015. 4. 20.
초고 작성기간	2015. 5. 1. ~ 2015. 7. 10.
초안 검토	금융공정거래팀 임동춘 팀장, 조대형 조사관
실무위원회 검토	2015년 7월 29일(수) 오후 3시 – 실무위원: 김기흥 실장 임동춘, 김사우, 김봉주, 이수기 팀장
외부전문가 자문	1. 전문가: 가정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요청일: 2015. 7. 23. 3. 답변일: 2015. 7. 30.
간행물 심의위원회 의결	2015년 9월 17일(목) 10시 – 위원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 위 원: 문병철 정치행정조사실장 임동춘 경제산업조사실장 직무대리 이인섭 사회문화조사실장 박출해 기획관리관

요 약

리스와 렌탈은 1970년대 초부터 주로 기업들에게 고가의 설비나 사무기기 등을 대여하는 수단으로 국내에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고객층이 일반 소비자들로 확대된 결과, 소비자들은 물건을 대여하는 방법이 다양해진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연상 변화에 비해 아직은 리스 및 렌탈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리스와 렌탈 관련 용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점과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한 쟁점과 개선방안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가 리스 및 렌탈 용어와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 '리스'라고 알려진 대여방법에 대해 「상법」은 '리스'라고 정의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라고 정의하고 있어 법률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양자가 같은 개념이라는 입장과 리스가 시설대여에 비해 넓은 개념이라는 입장이 있는 등 해석상 혼란이 있다.

둘째, 리스와 렌탈은 서로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리스의 일종인 운용리스와 렌탈은 서로 본질이 유사하며 구별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특히 자동차 운용리스와 렌탈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품임에도 규제주체와 규제내용이 달라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등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근 리스와 렌탈 소비자들의 수요와 함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예

를 들어, 리스나 렌탈 소비자는 할부거래 소비자 등과 비교하여 계약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청약을 철회하는 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리스 및 시설대여 용어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를 리스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용어를 정리하는 방안으로 가장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규율대상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황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리스의 일종인 운용리스와 렌탈은 모두 실무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양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확인하거나 동일하지 않다고 볼 경우 양자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양자의 개념정립 이전이라도 자동차 운용리스와 렌탈의 판매주체나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조정을 통해 양 업체 간 갈등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물건을 대여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소비자 보호 규정을 추가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판매 유형이 출현할 때마다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고 소비자 보호수준도 각기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해외의 추세와 같이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소비자를 동일하게 보호하는 체계적 변화를 장기적 과제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리스와 렌탈 상품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는 동산 대여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 용어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리스와 렌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차 례

□ 요약

Ⅰ. 서론 / 1

Ⅱ. 리스와 렌탈의 개요 / 3

1. 리스 ····· 3
가. 의의 및 연혁 ····· 3
나. 현황 ····· 5
(1) 리스업의 현황 ····· 5
(2) 리스의 대상물품 ····· 8
2. 렌탈 ····· 8
가. 의의 및 연혁 ····· 8
나. 현황 ····· 10
(1) 렌탈업의 현황 ····· 10
(2) 렌탈의 대상물품 ····· 12

Ⅲ. 문제점 / 13

1. 리스 관련 법률용어의 정비 부족 ····· 13
2.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적 유사성과 규제차별 ····· 17
가. 운용리스와 렌탈 개념의 유사성 ····· 17
나. 운용리스와 렌탈에 대한 규제차별 ····· 21
(1) 규제의 변화에 따른 중복적인 자동차 대여시장 형성 ····· 21

(2) 운용리스 상품과 장기렌탈 상품 간 유사성 ····· 23
(3) 적용법규와 소관관청의 차이로 인한 규제차별 ····· 25
다. 지속적인 규제차별 시장 형성의 가능성 ····· 27
3.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 미흡 ····· 27
가. 소비자 피해 현황 ····· 27
(1) 리스 피해 현황 ····· 27
(2) 렌탈 피해 현황 ····· 29
나. 소비자 보호방안 미흡 ····· 31

Ⅳ. 해외 입법례 / 35
1. 미국 ····· 35
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35
나.「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소비자신용보호법)」 ····· 36
다. 미국 각주의 「Consumer Rental-Purchase Agreement Act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 ····· 39
2. 독일 ····· 40
3. 일본 ····· 42
4. 시사점 ····· 43

Ⅴ. 개선방안 / 45
1. 리스 관련 법률용어의 정비 ····· 45
2.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 정비 및 규제형평성 제고 ····· 46
가. 운용리스와 렌탈 개념의 정비 ····· 46
나. 자동차 대여사업의 규제형평성 제고 필요 ····· 48
3.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강화 ····· 49

가.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 49
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 50
다. 표준약관과 분쟁해결기준 마련 ····· 51
라. 검토 ····· 52

Ⅵ. 결론 / 55

□ 참고문헌

표 차 례

[표 1] 최근 5년간 업종별 리스실행 현황 ····· 6
[표 2] 최근 5년간 물건별 리스실행 현황 ····· 7
[표 3] 소유권 양도 조건 유무에 따른 렌탈의 분류 ····· 9
[표 4] 렌탈 회원사 평균 매출액 ····· 11
[표 5] 렌탈 회원사 매출액별 분류 ····· 11
[표 6] 렌탈 회원사 업종별 분류 ····· 12
[표 7]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과 장기렌탈 상품의 비교(예시) ····· 24
[표 8] 리스민원 접수·처리 현황 ····· 28

그 림 차 례

[그림 1] 리스민원 접수·처리 현황 ····· 28
[그림 2]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연도별 소비자 상담건수 ····· 30

Ⅰ. 서론

□ 최근 세계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일정 사용료를 지급하고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리스와 렌탈을 중심으로 물건 대여시장이 커지고 있음

○ 국내 리스 시장규모(실행액 기준)는 2010년 9조 9,770억 원에서 2014년 12조 4,092억 원으로 성장하였고(약 24.3%), 렌탈은 2008년 약 4조 5,000억 원에서 2013년 약 10조 2,000억 원으로 약 127% 성장하였음

- 이는 초기에 주로 산업분야의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던 리스와 렌탈이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로 고객을 확대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리스업과 렌탈업의 확장세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산규모나 이용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물건의 관리나 교체가 편리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음

○ 예를 들어, 자동차리스의 경우 초기비용이 절감되고 중고차 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의류나 행사물품 등과 같이 한 번 사용하기 위해 물건이 필요한 경우 구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반면, 리스와 렌탈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확장된 역사가 오래지 않았고 소비자층도 폭넓지 않은 등으로 인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결과, 아직 리스나 렌탈 관련 용어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소비자 보호방안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리스’라는 용어는 「상법」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리스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은 리스가 아닌 시설대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렌탈’이라는

용어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쉽게 리스나 렌탈 관련 법률을 찾기 어려움

○ 또한, 리스나 렌탈업자에게 상품설명의무나 중도해지 조건 등에 관한 강제력 있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소비자를 구제할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소비자도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1년 이상의 자동차 장기대여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제대로 된 설명이 없이 운용리스상품이나 장기렌탈상품을 선택하였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운용리스는 잔여리스료와 자동차 잔존가치의 합에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렌탈은 회사와 약정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됨

- 이때, 소비자는 동일한 자동차 대여상품의 해지기준이 달라지는데 의문을 품고 관련 법령과 표준계약서 등을 검토하고자 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찾기 어려우며, 사전에 상품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에 대한 구제책도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리스 및 렌탈 관련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아직 부족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봄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리스 및 렌탈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 중에서 우선적으로 용어의 정비와 소비자 보호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여, 향후 본격적인 리스 및 렌탈 관련 제도 정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Ⅱ. 리스와 렌탈의 개요

1. 리스

가. 의의 및 연혁

□ 리스(lease)란,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借賃)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함[1)]

□ 리스의 종류는 목적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나뉘며[2)], 일반적으로는 금융리스가 아닌 경우를 운용리스로 통칭하고 있으나[3)4)] 그 밖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음

○ 리스기간에 따라 단기리스·장기리스로, 부대의무 부담자에 따라 순리스·총리스로, 대상물건의 특정여부에 따라 개별리스·포괄리스로, 리스료 지급방법에 따라 정액리스·정률리스로, 물건 구입가격의 전액 회수여부에 따라 완급리스·미완급리스로, 리스이용자에 따라 사업자리스·소비자리스로도 구분됨

○ 이하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분류인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중심으로 기

1) 김재두,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2., p.428.
2) 김재두, 앞의 글, p.431.
3) 조민제, 「법률상 금융리스의 개념에 대한 고찰-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26098 판결을 중심으로-」, 『여신금융』 제30호, 여신금융협회, 2012., p.58.
4)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별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문제점 이하에서 상술하기로 함

술하고자 함

□ 우리나라에서 리스산업은 1972년 한국산업은행이 단독 출자하여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도입되었음

○ 당시는 2차 산업 중심의 생산구조 하에서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을 앞두고 막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과 달리 설비금융을 조달하고 기업이 필요한 산업설비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리스산업이 등장하였음[5)6)]

○ 리스산업은 1972년~1978년의 도입기, 1979년~1983년의 정착기, 1984년~1989년의 성장기, 1990년~1997년의 경쟁기, 1998년~2003년의 전환기, 2004년~현재의 회복기를 거쳐 성장해왔음[7)]

- 1972년 도입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황에서 외자도입이 손쉬운 리스산업은 종금사들의 리스 겸업과 이들의 외국환은행 지정 등으로 인해 변동을 겪어왔음
- 1990년대 들어 지방 리스사들의 난립으로 인한 경쟁 심화와 뒤이은 금융위기 및 IMF 사태의 충격으로 인해 업계 전체가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심각한 부실을 경험하였음
- 이러한 리스업의 위기 이후 최근에는 자동차리스의 매출 증대로 업계 전체가 소폭 흑자를 시현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5) 김명진, 「리스거래에 관한 법률적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pp.6~10.
6) 모창환·정민지, 「자동차대여사업과 자동차리스업 간의 갈등해소방안」, 『교통정책브리프』 2006-2, 한국교통연구원, 2006., p.7.
7) 윤건용, 「국내 리스금융업 발전과정과 시사점」, 『NHERI 리포트』 제245호, 농협경제연구소, 2014., pp.17~26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나. 현황

(1) 리스업의 현황

□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총 28개사임[8)9)]

□ 최근 5년간 리스업의 규모는 2010년 9조 9,770억 원에서 2014년 12조 4,092억 원(실행액 기준)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는 기타 및 사회·개인서비스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종별 기준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임

8) DGB캐피탈, HP파이낸셜, KB캐피탈, 데라게란덴 주식회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 무림캐피탈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주), 비엠더불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산은캐피탈(주),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주식회사, 신한캐피탈(주), 씨앤에이치리스주식회사, 아프로캐피탈, 에이제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중동파이낸스,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 캐터필라파이낸셜서비스(주), 케이티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한국리스여신주식회사, 한국씨티그룹캐피탈, 한국종합캐피탈주식회사 한국캐피탈주식회사,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주식회사, 효성캐피탈주식회사

9)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시설대여 = 리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여신금융협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시설대여업의 현황으로 리스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리스 현황자료를 시설대여의 현황으로 인용함

[표 1] 최근 5년간 업종별 리스실행 현황

(단위: 억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농수산업	113	121	129	141	174
광업	105	147	300	229	300
제조업	109	105	80	249	320
건설업	1,662	931	1,198	933	852
도소매업	478	639	516	784	1,351
숙박 및 관광업	3,865	3,355	3,163	2,849	2,448
운수 및 창고업	3,860	3,642	3,416	3,209	3,684
통신업	2,829	3,548	2,648	3,386	4,149
금융보험 및 용역업	8,355	8,426	8,850	9,391	9,628
의료업	10,324	11,576	9,992	11,945	14,207
환경산업 (공해방지)	10,588	10,110	9,579	11,324	14,637
사회·개인 서비스업	27,523	30,104	31,530	28,138	33,407
기타	29,959	33,314	31,226	35,489	38,935
합계	99,770	106,018	102,627	108,067	124,092

자료: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 <https://www.crefia.or.kr> (최종 검색일: 2015.10.23.)

○ 물건별로는 운수운반기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리스는 전체 리스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2010년 이후 그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임

- 전체 리스에서 자동차리스가 차지하는 규모는 2010년 59.4%, 2011년 58.3%, 2012년 56.8%로 다소 주춤했으나, 2013년 59.4%, 2014년 63.9%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최근 5년간 물건별 리스실행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산업기계기구	16,634	22,945	21,199	21,771	21,327
일반산업기계	8,290	11,526	8,107	7,658	7,163
동력이용기계	41	445	215	95	989
공작기계	8,303	10,974	12,877	14,018	13,175
운수운반기기	63,388	65,247	62,886	67,298	83,470
자동차	59,280	61,804	58,247	64,171	79,288
건설기계	1,681	1,426	1,612	1,292	1,762
선박	2,427	1,977	2,817	1,763	2,380
항공기	0	40	210	72	6
철도차량	0	0	0	0	34
의료기기	8,368	8,903	9,225	9,769	9,246
공해방지용 기기	7	11	0	7	0
교육·과학기술용 기기	7,220	5,253	5,402	3,739	6,354
사무기기	1,015	495	339	530	582
컴퓨터	5,408	4,147	4,035	2,699	3,869
기타	796	611	1,028	510	1,903
통신기기	1,631	1,221	1,276	1,249	1,051
유통용 산업기기	100	368	206	343	243
기타	2,422	2,070	2,433	3,891	2,401
합계	99,770	106,018	102,627	108,067	124,092

자료: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 <https://www.crefia.or.kr> (최종 검색일: 2015.10.23.)

(2) 리스의 대상물품

□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대상 물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즉, 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제1호),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제3호), 중소제조업체[10]로부터 취득한 해당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해당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讓渡)한 중소제조업체[11]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제4호), 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12](제5호) 등임

2. 렌탈

가. 의의 및 연혁

□ 렌탈(rental)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한정된 종류의 범용성(汎用性) 있는 물건(자동차, 건설기계, 컴퓨터, 복사기 등)을 대여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음[13]

□ 렌탈의 종류는 구분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양도 조건 유무에 따라 '반환형(단기/장기)'과 '소유권 이전형(사

10)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製造業)을 하는 기업을 의미함

11) 시설대여 기간 중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라 시설대여계약을 양수한 중소제조업체를 포함

12)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한 바 없음

13)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3., p.410.

후관리 서비스 有/無)'으로 구분하고 있음[14)]

[표 3] 소유권 양도 조건 유무에 따른 렌탈의 분류

구분	내용	종류	주요 물품
반환형	- 일회 대여로 사용목적 충족 - 계약 종료 시 대여물품 반납	단기	서적, 음반, 의류 등
		장기	시즌용품, 레저용품 등
소유권 이전형	- 일정 기간 동안 대여물품 사용 - 계약 종료 시 대여물품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	사후관리 서비스 有	정수기, 비데, 매트리스 등
		사후관리 서비스 無	안마의자, 가구 등

자료: 한국소비자원, 「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 보도자료, 2014.7.10.을 토대로 작성

○ 그밖에, 영업형태에 따라 대여 이후 소유권 이전을 고객이 선택하는 '대여 후 선택형', 회원으로 가입하여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회원형', 한번 사용을 위해 대여하는 '단기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함[15)]

□ 우리나라에서 렌탈서비스업이 시작된 것은 1986년 '한국개발리스'가 전자계측기, 사무기기 등을 대여하기 위해 '한국렌탈'로 법인전환을 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당시 한국개발리스 등 국내 8개 리스회사들은 그간 기계류와 컴퓨터 등 값이 비싼 물품을 대상으로 한 리스영업에서 탈피하여 계측기와 사무자동화기기의 대여를 거쳐 생활용품 대여까지 영업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음[16)]

14) 한국소비자원, 「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보도자료, 2014.7.10., p.3.

15) 박승준,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04-12, 한국소비자원, 2004., p.20.

○ 한국렌탈은 당초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대여업이 시작된 것은 1989년 '한국훼미리렌탈'임[17)]

- 한국훼미리렌탈의 대여품목은 어린이용품, 비디오카메라, VTR, TV, 컴퓨터, 휠체어, 텐트, 여행용가방, 컴퓨터 등 약 200여 가지로, 대여금은 제품 가격의 1.5%에서 3%를 책정했던 것으로 알려짐[18)]

나. 현황

(1) 렌탈업의 현황

□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렌탈업체는 약 2만 4,000여개로 알려져 있으며, 2015년 3월 말 현재 한국렌탈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는 96개임

□ 렌탈서비스업 시장규모는 2004년 약 1조원이었다가 2008년 약 4조 5,000억 원, 2013년에는 약 10조 2,000억 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19)]

○ 구체적으로는, 2004년(약 1조원) → 2006년(약 3조원) → 2008년(약 4조 5,000억 원) → 2013년(약 10조 2,000억 원) 등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2013년 기준으로 피부관리·헬스·성형 등 국내 뷰티산업, 게임시장, 배달음식 등의 시장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 한국렌탈협회에 등록된 회원사 중 매출액 현황을 제출한[20)] 48개사의 평

16) 매일경제, 「리스사 '렌탈금융' 확대」, 1987.5.16일자 기사
17) 박승준, 앞의 글, p.3.
18) 연합뉴스, 「생활용품 렌탈업체 성행」, 1991.3.11일자 기사
19) 한국소비자원, 앞의 글, p.3.

균 매출액은 2013년 말 기준으로 75억 5,000만 원이며, 2014년 말 기준으로 85억 6,000만 원 수준임

- 상위 5개사의 평균 매출액은 2014년 말 기준 613억 원으로, 상위 5개사를 제외한 평균 매출액인 21억 3,000만원과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대비 2014년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0%를 상회함

[표 4] 렌탈 회원사 평균 매출액

(단위: 억 원, %)

	2013	2014	증가율
전체 평균 매출액	75.5	85.6	13.4
상위 5개사	557.6	613.0	9.9
상위 5개사 제외	19.4	21.3	9.8

자료: 한국렌탈협회, 「국회입법조사처 질의회신」, 2015.4.

- 이를 회원사별로 분류해보면 1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회원사는 2013년 말 기준 5개에서 2014년 말 기준 8개로 증가함

[표 5] 렌탈 회원사 매출액별 분류

(단위: 개)

	2013	2014
10억 원 미만	17	15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0	19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6	6
100억 원 이상	5	8
합계	48	48

자료: 한국렌탈협회, 「국회입법조사처 질의회신」, 2015.4.

20) 한국렌탈협회, 「국회입법조사처 질의회신」, 2015.4.

(2) 렌탈의 대상물품

□ 렌탈을 규율하는 법령이 「민법」 외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렌탈의 대상물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하나의 회사가 다양한 물품을 렌탈하는 것도 가능함

○ 한국렌탈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기준으로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 렌탈사부터 IT장비 렌탈사, 행사용품이나 사무가구 렌탈사 및 이동식 화장실 렌탈사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함

[표 6] 렌탈 회원사 업종별 분류

(단위: 개)

업종	회원사 수
종합렌탈	43
IT, 영상, 음향	19
건설, 산업	7
레저, 이벤트	14
이동화장실, 기타	13
합계	96

자료: 한국렌탈협회, 「국회입법조사처 질의회신」, 2015.4.

Ⅲ. 문제점

1. 리스 관련 법률용어의 정비 부족

□ 현행법상 리스와 관련된 내용은 「상법」과「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양 법률이 리스를 각기 다른 용어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각 용어의 동일성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에 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였음

□ 「상법」은 상행위 통칙에서 리스의 일종인 금융리스를 행하는 '금융리스업'을 상행위의 일종으로 정의하고[21], 제12장에서 금융리스업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즉, 제12장은 제168조의2(의의),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를 규정하고 있음

○ 「상법」은 리스나 금융리스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금융리스업자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금융리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21)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총칙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일종으로 '시설대여'가 포함된다고 명시하면서 시설대여업 및 시설대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9. "시설대여업"이란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제3장에서는 주로 시설대여 이용자가 등기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시설대여업자에 대해 해당 요건의 충족을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22)]

□ 위와 같은 「상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태도와 관련해서는 법체계상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리스와 관련하여 양 법률은 금융리스업자와 시설대여업에 대한 정의를 각각 두고 있는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가 「상법」상 '금융리스' 와 동일한 범주인지 또는 운용리스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인지 법문상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였음

22) 제28조(적용 범위),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제31조(「의료기기법」상의 특례),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이론적으로는 논거에 따라서 이를 같게 보거나[23] 다르게 보는[24] 견해가 모두 제시된 바 있음

○ 법률 연혁적으로는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모두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인 것으로 판단됨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전신인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서 '시설대여'는 물건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리스(financial lease)'만 의미하고 있던 것으로 이해되었음
- 이후 동법이 1991년 「시설대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다양한 리스업 형태를 포섭하기 위해 '유지 및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구가 삭제되었음
- 개정 당시 「시설대여업법」 개정안 심사보고서는 '시설대여'의 의미가 금융리스 외에 '운용리스'를 포함하게 되었다고 정리하고 있음
- 이후 「시설대여업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개정되면서 동 규정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현재도 '시설대여'의 정의에는 '운용리스'가

23) 윤민섭·반도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스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2014., p.368. 판례도 시설대여를 금융리스와 같은 개념으로 등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26098 [판결요지] 이른바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는 바...(이하 생략)

24) 조민제, 앞의 글, p.71.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리스와 관련된 법률상 정의규정이 불완전하게 정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양 법률이 모두 리스의 일부인 '금융리스'를 규율할 의도라면 동일한 내용을 다른 법률에 다르게 정의하는 결과가 될 것임
- 「상법」은 금융리스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리스 전체를 규율할 의도라고 해도, 금융리스업자는 「상법」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복적인 정의에 따른 혼란이 발생함

□ 둘째, 동일한 의미에 대해 전혀 다른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른 법령도 정비가 불완전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시설대여자산'이 아닌 '리스자산'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리스자산"이라 함은 운용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선급리스자산, 렌탈자산, 관련 미수금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도록 하는 등 규정 내에서도 용어를 혼용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9조(자산건전성 분류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14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

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받거나 등록받은 업별로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과 대출금, 할인어음, 팩토링, 유가증권, 미수금, 가지급금,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2. 시설대여업 : 리스자산

○ 이는 리스 관련 법률의 분산과 불완전한 정비로 인해 정책당국의 법률 적용 및 집행 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2.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적 유사성과 규제차별

□ 리스의 일종인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상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전혀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결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 규제내용이 다른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가. 운용리스와 렌탈 개념의 유사성

□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을 비교해 볼 때, 양자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음

□ 운용리스와 렌탈은 사전(辭典)적으로 모두 '빌려 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25),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용어만으로 양자의 직관적인 차이점을 찾기 어려움

○ 소비자들은 통상 운용리스나 렌탈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 등에 대한 선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

25) 사전(辭典)적으로 '리스'는 '기계, 설비, 기구 따위를 임대하는 제도'이며 '렌탈' 은 '임대, 임차, 대여' 등임(현재 기계, 설비, 기구 등도 모두 광범위한 렌탈 상품의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음)

보통임

□ 운용리스와 렌탈은 모두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실무 또는 이론상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양자의 법적 성격은 모두 임대차로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운용리스와 렌탈은 모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민법」 제618조)임

○ 자동차 렌탈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26], 자동차 렌탈 또한 '유상'의 '대여'가 본질적인 것으로 「민법」상 임대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임

□ 운용리스와 렌탈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학계와 실무의 입장을 검토해보아도, 연혁적인 이유로 운용리스와 렌탈이 각자의 영역을 구축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의 차이가 개념 본질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이 있음

○ 먼저, 운용리스에 대한 학문상 정의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첫째,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를 총칭하는 것을 운용리스라고 보는 견해[27]가 있음

---

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가 아닌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통상 자동차 렌탈이라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 둘째, '리스업자가 사전에 취득하여 구비하고 있는 물건[대체로 범용[28]성(汎用性) 있는 컴퓨터, 자동차, 복사기 등]을 이용자가 선정하여 일정기간 정기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거래[29]'라고 정의하기도 함[30]

- 셋째, 기간이 금융리스보다 단기로서 내용연수의 일부로 정해지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리스물건의 멸실 등의 위험을 리스업자가 부담하고 리스물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 보험과 세금 등 제반비용을 리스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운용리스라고 정의하기도 함[31]

  ◆ 운용리스는 금융보다는 물건의 대여라는 서비스에 중점이 있어서 언제든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용자는 서비스료만 납부하면 물건의 수선, 납세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임

○ 다음으로, 렌탈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한정된 종류의 범용성(汎用性) 있는 물건(자동차, 건설기계, 컴퓨터, 복사기 등)을 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음[32]

○ 이를 토대로 운용리스와 렌탈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보면,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는 범용성 있는 물건으로 동일하고,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이며 기간은 단기간 또는 일정기간 등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7) 최준선, 앞의 책, p.411.
28)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9)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3., p.595.
30)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유사하게 '자동차, 컴퓨터, 복사기 등 고객층이 넓고 가동률이 높은 물건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기간 임대하는 것'을 운용리스라고 제시한 바 있음(박승준, 앞의 글, p.4.)
31)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4., p.27.
32) 최준선, 앞의 책, p.410.

- 운용리스는 사업자가 사전에 물건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렌탈 사업자도 대부분 물건을 사전에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렌탈과 운용리스의 근본적 차이 및 구별의 실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있음
- 운용리스는 금융적 성격이 있고 렌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가능하지만, 렌탈이 현금을 직접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하는 대신에 렌탈업자가 미리 구입한 물건을 간접적으로 물융(物融)하는 것이므로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금융이라고 이해한다면[33], 금융적 성격 유무를 구별의 실익으로 삼기는 부족할 것임
- 실무에서는 편의상 리스회사가 물품을 대여할 경우를 '운용리스', 일반 렌탈회사가 물품을 대여할 경우를 '렌탈'이라고 칭하는 시각도 있으나, 최근에는 리스회사[34]가 자동차 리스상품 외에 자동차 장기렌탈 상품도 별개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장기렌트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 운용리스는 수입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35] 이는 소비자의 경향 차이로 볼 수 있을 뿐 양자의 구별의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는 리스와 구별하여 '렌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실무상 리스와 렌탈을 구별

33) 소건영, 「렌탈의 법적 고찰」, 『사법행정』 제50권 제1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p.35.

34)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를 하는 사업자도 자동차 운용리스사업 이외에 자동차 장기렌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요구되는 시·도지사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35) 허재영, 「자동차리스와 장기렌트카, 가격비교와 인기차종은?」, 『이코노믹리뷰』, 2014.9.24일자 기사

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에 대한 설명을 두고 있지는 않음

나. 운용리스와 렌탈에 대한 규제차별

□ 운용리스와 렌탈이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다르게 인식되어 온 결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 시장이 등장하게 되었음

○ 즉, 자동차 대여시장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취급하는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과 자동차 장기렌탈 상품이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음

(1) 규제의 변화에 따른 중복적인 자동차 대여시장 형성

□ 자동차 리스의 이용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대여업자 등 사업자로 제한되어 있다가 일반소비자로 확장되면서 사업의 성격과 범위가 중복되는 자동차 대여시장이 형성되었음

□ 구「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시설대여 대상 품목에 차량을 포함시키면서도 사실상 시설대여의 이용자를 사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장하였음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얻거나 자동차대여업자로 등록한 자 외에는 시설대여계약기간 종료 후 당해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음[36]

36)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건을 말한다.

○ 1994.4.24. 정부는 시설대여업의 영업에 대한 각종 제한을 폐지하여 시설대여업의 영업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3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결과(대통령령 제16261호) 자동차의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대여업도 허용되었음

□ 자동차 렌탈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리스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반발하였음[38]

- 리스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대규모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렌탈업체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렌탈업계 입장에서는 규모에서 밀릴 우려를 표명하였음[39]
- 또한 90일 이상 장기렌트카에 대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개정 과정에서, 기존에 모든 렌트카의 자동차세를 영업용으로 과세받던 렌탈업계의 반대입장과 공정한 경쟁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리스업계의 찬성입장이 대립된 바 있음[40]

---

1.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
2. 건설기계·차량·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얻거나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사용할 자동차는 시설대여계약기간 종료 후 당해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1998·6·24>

3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61호)」제·개정 이유

38) 모창환·정민지, 앞의 글, p.14.

39) 추승호, 「렌터카업계, 금융사 자동차대여업 진출에 반발」, 연합뉴스, 2005.7.19 일자 기사

(2) 운용리스 상품과 장기렌탈 상품 간 유사성

□ 리스와 렌탈업계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자동차를 1년 이상 대여하는 장기대여시장으로, 이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 국내 여신금융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과 장기렌트카 상품을 비교해보면, 행정적 처리 외에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본질적인 차이가 눈에 띄지 않음

○ 자동차 운용리스 및 자동차 장기렌탈 상품은 모두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빌려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속성이 동일함

- 양자 모두 대여기간은 12개월 이상이고, 차량의 유지 서비스를 상품에 포함할 수 있으며, 만기 시 구매나 반납·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음

40) 정미희, 「리스업계, '장기렌탈, 자가용 분류 당연'」, 서울파이낸스, 2005.12.5일자 기사

[표 7]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과 장기렌탈 상품의 비교(예시)

차량 소유 이용형태		
구분	자동차 운용리스	장기렌탈
차량소유자	리스사업자	리스사업자
등록명의	리스사업자 또는 고객	리스사업자
이용가능차종	전 차종	승용 및 15인승 이하 승합
이용기간	12, 24, 36, 48, 60개월	12, 24, 36, 48, 58개월 (금융렌트 60개월 가능)
번호판 형태	일반 번호판	렌터카용 번호판(‘허’,’호’,’하)
차량 유지 · 관리		
구분	자동차리스	장기렌탈
LPG 연료사용	불가	가능
연간약정거리	최장 4만Km 제공	무제한
정비서비스	포함/불포함 선택	포함
세금·비용 처리	세금·비용 처리	세금·비용 처리
세금 · 비용 처리		
구분	자동차리스	장기렌탈
비용처리	리스료 전액 (운용리스)	렌트료 전액 (운용렌트)
재무건전성	재무제표자산 /부채 계상되지 않음	재무제표 자산 /부채계상되지 않음
보험요율	고객 요율 적용(보험경력유지)	현대캐피탈 요율 적용
잔존가치 보장	보장	보장
만기 시 옵션	구매/반납/연장 중 선택	구매/반납/연장 중 선택

자료: H사 홈페이지

○ 양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LPG 연료사용 부분, 번호판 형태, 연간 약정거리, 이용 가능 차종, 보험요율 등이나, 보험요율을 제외한 항목들은 행정적·정책적 이유로 인한 차이일 뿐 양자의 본질적 차이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보험요율의 경우 통상 자동차리스는 보험 가입 경력 인정과 보험요율 산정이 일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리스 이용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가 직접 보험사를 선택하거나 리스사와 제휴된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렌탈(장기)[41]은 렌탈(리스)업자 요율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렌탈료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구조임
- 통상 리스는 장기로 이루어지고 렌탈은 단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렌탈의 경우 자주 바뀌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것보다 렌탈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
- 그러나 리스와 대여기간에 큰 차이가 없는 장기렌탈이 늘어나면서, 장기렌탈의 경우에도 렌탈업자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적용법규와 소관관청의 차이로 인한 규제차별

□ 자동차 장기운용리스와 장기렌탈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리스업자와 자동차 렌탈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규와 소관 관청 등의 취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 자동차 리스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자동차 렌탈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 운용리스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이어야 하며[42],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여신

41)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렌탈업 중에서도 장기렌탈만 할 수 있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7조의2제2항제7호)

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3항)

-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43]」에 근거하여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법 제28조,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 적용 법규와 소관 관청의 차이로 인해 자동차 장기리스와 자동차 장기렌탈에 대한 행정적 규제내용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 업계 사이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44]

○ 예를 들면,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은 전 차종을 제공할 수 있으나, 렌탈상품은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제공할 수 있고, 리스상품은 일반 번호판을 이용하나 렌탈상품은 렌터카용 번호판을 이용해야하고 LPG연료 사용의 허용여부도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차이는 모두 행정적 규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상품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42)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시설대여업을 할 수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43)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대여약관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대여책임의 시기 및 종기,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함(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44) 모창환·정민지, 앞의 글, p.16.

다. 지속적인 규제차별 시장 형성의 가능성

□ 규제의 변화에 따라서는 새로운 물품에 대한 중복시장과 규제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있음

○ 자동차 대여시장 문제는 자동차 렌탈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용리스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충돌이 발생한 것임

○ 정부가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렌탈 품목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나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 미흡

□ 최근 리스 및 렌탈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 및 불만신고, 민원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방안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가. 소비자 피해 현황

(1) 리스 피해 현황

□ 리스는 주로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로 이루어졌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해당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는 특정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리스거래가 이루어져 왔음

○ 최근 리스시장에서 자동차 운용리스를 중심으로 점차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리스와 관련된 민원은 2013년 141건에서 2014년 177건으로 1년 사이 36건(약 26%)이 증가하였음

○ 발생 빈도는 채권추심, 리스료, 리스승계, 중도해지수수료 부문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표 8] 리스민원 접수 ·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증감
채권추심	31	44	13
리스료	5	33	28
리스승계	15	27	12
중도해지수수료	24	11	△13
하자담보책임	3	9	6
설명불충분	15	5	△10
기타	48	48	-
합계	141	177	36

자료: 금융감독원, 「리스민원 분석 및 개선사례」 보도자료, 2015.3.31., p.2.

[그림 1] 리스민원 접수 ·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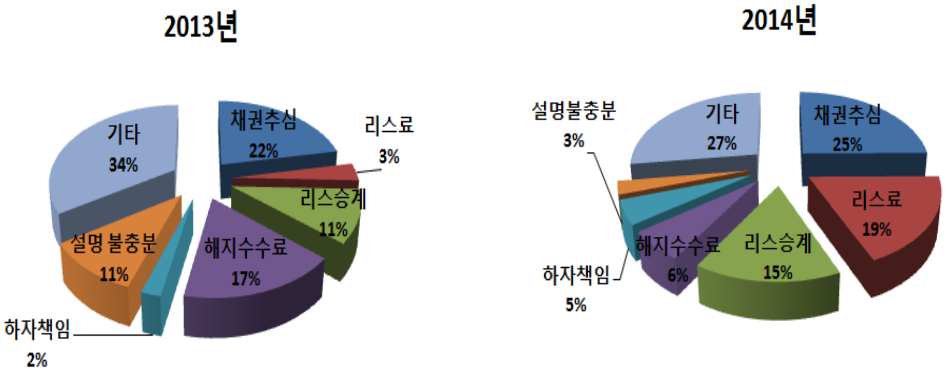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리스민원 분석 및 개선사례」 보도자료, 2015.3.31., p.2.

□ 특히, 소비자들이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계약한 결과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리스소비자는 리스계약 시 일반적인 임대차와 같이 자유롭게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거나 리스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계약의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비교적 높은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고 리스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리스사업자가 리스물건 처리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리스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높은 이율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하게 됨
- 리스소비자는 리스사업자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해 준 이후에 발생한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리스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2) 렌탈 피해 현황

□ 렌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소유권 이전형 렌탈을 중심으로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45)]

○ 주요 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계약해제 및 해지 거부,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불만(37.3%), 품질 및 A/S 관련 불만(20.6%), 부당채권 추심(17.4%) 등의 순서임

45) 한국소비자원, 앞의 글, p.4.

[그림 2]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연도별 소비자 상담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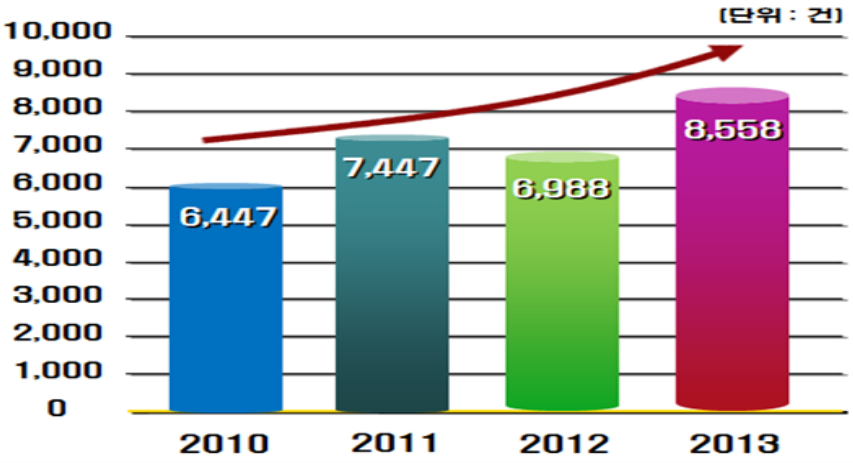

자료: 한국소비자원, 「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 보도자료, 2014.7.10., p.1.

□ 특히, 렌탈기간 종료 시 물품의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소유권 이전형 렌탈과 관련하여 '총 렌탈료'와 '일시불 구입가'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최근 문제된 바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체별 주요제품(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총 렌탈료가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46)]

○ 대부분의 업체들이 홈페이지 등에 '총 렌탈료'와 '일시불 구입가'를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조건'만을 표시하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주요 정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

46) 한국소비자원, 앞의 글, p.5.
렌탈 품목에 따라 A/S비용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비교하기 어려우나, 안마의자나 가구, 전자제품과 같이 설치 이후 특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도 실제 구입가보다 고액이라고 분석됨

을 체결하게 된 것임

- 「민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계약 직후 알게 되어도 청약의 철회는 인정되지 않음

나. 소비자 보호방안 미흡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법의 성격상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4조)

○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하고,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19조)

□ 이에 비해, 할부계약이나 방문판매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정보제공 또는 철회조건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양법은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효력을 부정하며, 법률의 구속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 할부계약 소비자는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금가격이나 할부가격 등을 포함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

-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할부계약 서면주의, 청약의 철회(7일 원칙), 할부계약해제(14일 이상 최고 원칙) 규정 등에 따른 보호도 가능함
- 방문판매 소비자도 계약에 관한 주요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약철회의 조건(제8조), 금지행위(제11조) 등에 따른 보호도 보장되어 있음

□ 결국 리스 및 렌탈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의 보호대상이지만 동법상 구체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할부계약이나 방문판매와 같이 소비자가 자신이 어떤 규정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리스 및 렌탈소비자에게 할부계약이나 방문판매와 같은 보호 수준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할부계약과 방문판매 등의 보호 수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 체계상 소비자가 어떤 종류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각기 달라지는 점도 문제인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에서 모두 소비자 보호에 특유한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철회의 행사요건, 행사기간, 행사방법, 청약철회의 제외범위 및 효력 등이 거래유형에 따라 모두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47)]

-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을 예로 들면, 할부거래는 7일, 방문판매는 14일, 30일 또는 3개월이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단계판매는 14일, 30일 또는 3개월이고(「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7일, 30일 또는 3개

47) 김진우, 「소비자계약법의 현황과 전망」, 『민사법학』 제6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p.409.

월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또한, 소비자가 계약 체결 시 기준이 될 만한 표준계약서(표준약관)나, 분쟁발생 시 참고할 만한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48]이 미비하거나 부족하여 소비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리스와 관련해서는 표준약관(자동차 제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모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리스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움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리스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바 있음[49]

○ 렌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품목에 대한 표준약관과 한 종류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역시 다양한 품목의 렌탈로 인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상황임

- 렌탈 표준약관은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52호[50])'

4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한 것임(「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49) 약관에 대한 시정은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임. ① 리스차량의 취득세·등록세를 리스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② 자동차 인수증 발급 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③ 리스기간 개시 시점을 리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한 조항, ④ 자동차 인수증에 하자 미기재 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⑤ 리스 보증금의 담보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 등이 시정대상이 되었음(공정거래위원회,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시설대여 불공정 약관 시정」 보도자료, 2015.5.11.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4호[51])' 등 두 가지임[52]

- 렌탈과 관련하여 마련되어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53] 중 ['49. 정수기 등 임대업(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임

50) 2003.3.21. 제정

51) 2011.9.23. 개정

52)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현황기준임. 그 밖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가 있으나 동 표준약관에는 리스나 렌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음

53)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60여 개 업종, 670여 개 품목에 대해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및 위약금의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Ⅳ. 해외 입법례

1. 미국

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미국통일상법전[54]에서는 제2편 매매에 이어 제2A편에서 '리스(lease)' 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미국통일상법전에서 '리스'는 '일정 기간 동안 물품의 점유 및 사용권을 이전하는 계약'임

- 승인조건부매매(sale on approval) 또는 특약조건부 매매(sale or return) 등의 매매 또는 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유지 또는 설정은 제외되며, 다른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전대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리스의 대상이 되는 '물품(goods)'은 금전, 증서, 계좌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동산(that are movable), 정착물(fixtures) 등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U.C.C. §2A-103(1)(h)]

□ 미국통일상법전은 특히 '소비자리스(consumer lease)'와 '금융리스(finance lease)'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54) 미국은 각 주마다 상법이 달라 초래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하여 통일된 상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결과, 1890년부터 이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1952년 미국법률협회와 통일주법전국위원회에서 미국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을 제정하였음(박정기, 윤광운, 「미국통일상법전」, 법문사, 2006, p.ⅴ.). 그러나, 이는 주법의 통일을 위한 모범법률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각 주법에 통일상법전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한 실정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하며,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 오클라호마주, 위스콘신주 등에서 통일상법전의 내용을 반영한 상법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윤민섭·반도헌, 앞의 글, p.377.)

○ ‘소비자리스’는 ‘리스업 또는 판매업을 규칙적으로 영위하는 임대인(lessor)이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사(household)상 목적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lessee)에 대하여 행하는 리스’라고 규정함[U.C.C §2A-1-3.(1)(e)]

○ ‘금융리스’는 ‘① 임대인이 물품을 선택, 제조, 제공하지 않을 것, ② 임대인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물품을 취득하거나 점유권, 사용권을 획득하고, ③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55]를 충족할 것 등을 요구함

○ 동법전은 일정한 경우 이들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U.C.C. §2A-106(준거법 및 법원), §2A-219(손실의 위험) 등]

□ 미국통일상법전에서는 리스계약에 관한 규정 이외에 별도로 ‘렌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관련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나.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소비자신용보호법)」

□ 「소비자신용보호법(15U.S.C 41[56])」은 ‘신용비용 공개(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파트의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s)에서 ‘credit sale(신용판매)’[15U.S.C§1602(h)]를, 소비자 리스 조항 (Consumer Leases) 에서 ‘consumer lease(소비자 리스)’[15U.S.C §1667(1)]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소비자 법제는 크게 ‘제품의 안전’과 ‘소비자 신용의 보호’라는

55) 임차인의 계약서사본 수령, 리스계약 유효화 조건의 충족 등 §201-A(1)(g)(ⅲ)에서 정한 조건을 의미함

56) 미국법률집은 미국의 일반적이고 영구적인 법률(the general and permanent laws)을 주제별로 코드화하여 만든 내용으로 현재 의회, 은행, 노동 등을 비롯한 총 54개 title로 구성되어 있으며(http://uscode.house.gov/, 최종검색일 2015.4.24.), title 15(제15편)는 상업과 무역(Commerce and Trade)에 관한 법률내용을 모아놓은 것임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에 대해서는 대부, 신용카드, 소비자리스 등을 모두 이용자가 타인으로부터 신용제공을 받는 '소비자신용계약'이라고 보고 이를 묶어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것임[57]

○ 소비자들이 소비자 신용을 제공받게 되면, 소비자는 채무자로서 궁극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서비스를 사용 또는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전을 변제하는 것임[58]

□ 'credit sale'은 매도인이 신용제공자인 모든 형태의 판매계약으로서, 임차인이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 가치에 해당하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는 계약임

○ 임차인이 계약의 의무를 모두 준수하면 재화의 소유자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합의로 체결하는 임치 또는 임대차 형태의 모든 계약을 의미하는 내용임

□ 'consumer lease[15U.S.C§1667(1)]'는 "자연인(natural person)이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총 계약관련 비용(total contractual obligation)이 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로 개인, 가족, 가사상 목적을 위해, 리스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이 그 재산을 구매하거나 소유자가 되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개인적인 재산(personal property)의 사용을 위한 리스 또는 위탁(bailment)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음[59]

57) 동법은 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1601-1667f), Restrictions On Garnishment(§§1671-1677), Credit Repair Organizations(§§1679-1679j), Credit Reporting Agencies (§§1681-1681x), Equal Credit Opportunity (§§1691-1691f), Debt Collection Practices (§§1692-1692p), Electronic Fund Transfers(§§1693-1693r) 등으로 구성됨

58) 가정준, 「미국의 소비자렌탈구매계약법안의 내용 및 시사점」, 『Issue Brief on Foreign Law』 2014-5, 한국법제연구원, 2014.9.5., p.5.

○ 이때 개인적 재산에는 일정한 조건[60]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임대인은 리스, 리스중개 또는 소비자리스 중개업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함[15U.S.C§1667(3),(4)]

□ 「소비자신용보호법」상 'credit sale'이나 'consumer lease'가 우리나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할부거래계약'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음[61]

○ 국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을 '직접할부계약'이라 하고,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의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 완납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계약을 '간접할부계약'이라고 하여 구별하고 있음[62]

○ 국내법상 간접할부계약이 신용제공자, 사업자(물품공급자), 소비자 등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간접할부계약의 소비자들이 신용을 제공받게 되면, 결국

---

59) 같은 조에서 §1602(g)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판매, 농업, 상업적인 목적, 정부기관, 조직을 위한 리스 등은 소비자리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60)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주에 소재한 부동산을 의미함

61) 가정준, 앞의 글, p.6.

6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을 말한다.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재화의 가격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전을 변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미국 각주의 「Consumer Rental-Purchase Agreement Act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Consumer Rental-Purchase Agreement Act」가 제정 및 발효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 또는 '소비자렌탈구매계약법'등으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음(이하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

○ 주 차원의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을 연방법인「소비자신용보호법」의 일부분으로 도입하고자 동명의 법률안이 연방하원에 제안되어 2013년에 통과되었으나,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였음

- 「소비자신용보호법」이 직접할부계약은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방차원에서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의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63)]

○ 국내에서는 미국의 각주가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을 통해 일반적인 렌탈에 대해 한국과 달리 렌탈 총액과 구입가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음

- 그러나, 동법률은 모든 렌탈(임대)이 아닌 일정한 조건을 갖춘 '소비자임대구매계약'이자 직접할부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미국의 입법태도가 현행 국내법의 태도와 크게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우리 법률도 할부계약 체결 전에 할부거래업자가 현금가격과 할부가격을 모두 소비자에게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할부거래에 관한

63) 가정준, 앞의 글, p.3.

법률」제5조)

□ 주법상 규정된 '임대구매계약' 의 정의를 예시하면, 신용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주로 개인, 가족, 가사상 목적으로 물건을 임대하되, 첫 계약기간이 4개월을 넘지 않고, 만일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선택권이 있거나 법률상 권리가 없다면 재계약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함[California「Civil Code」§1812.622(d)]

○ 대부분 주의 「소비자임대구매계약법」에서 우리나라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정보제공(할부가격의 총액, 상품의 현금가격 등)'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소비자임대구매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에서도 논란 중인 것으로 보임

- 소비자임대구매계약의 성질을 임대차로 보면 일반법인 「계약법」과 「재산법」의 적용대상이고, 신용거래로 보면 특별법인 신용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므로, 사업자들은 전자의, 소비자들은 후자의 적용대상이 되기를 바라게 됨[64]

2. 독일

□ 독일은 1991년에 소비자 할부신용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Abzahlungsgesetz)」을, 소비자 금융신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신용법(Verbraucherkreditgesetz)」을 제정하였음[65]

64) 가정준, 앞의 글, p.3.
65) 황태희,「외국의 소비자 신용법 제도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08.12.14., p.105.

□ 이후, 「민법」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한 후(제13조 및 제14조[66])), 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군의 특별법을 「민법」에 포함시켰음

○ 이때 「민법」에 포함시킨 법률들은 「보통거래약관법(AGBG, 1976)」, 「방문판매철회법(HWiG, 1986)」, 「소비자신용법(VerbrKrG, 1990)」, 「일시거주권법(TzWrG, 1996)」, 「통신판매법(FernAbsG, 2000)」등임

- 이는, 법체계적 관점은 물론 법리적 관점에서도 일종의 혁명적 조치로서, 사적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민법의 확고한 근본원리로 여기던 당시 국내외 학계에 많은 충격을 준 변화였음[67])

○ 참고로, 독일의 이와 같은 입법태도에 대해 독일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뉜 바 있음

- 즉, 찬성의견은 추락한 「민법」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의 일원화와 통일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임

- 반대의견은, 「민법」의 원리를 왜곡시키면서까지 소비자 보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민법」에 통합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민법」에

---

66) 이하 본문 및 각주의 독일「민법」의 내용은 양창수,『독일민법전』(박영사, 2015.)의 번역본을 참조함
제13조 소비자라 함은 주로 자신의 영업활동이나 독립적 직업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제14조 ① 사업자라 함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영업활동 또는 독립적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행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를 말한다.
②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라 함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능력을 갖춘 인적 회사를 말한다.

67) 김진우,「독일 소비자계약법의 동향과 전망」,『외법논집』제3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pp.19-20.

대한 존중을 결여한 처사라는 관점이 있음

□ 현재 독일 「민법」 제3절 중 제1관(제491조부터 제505조)은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일반소비대차와 그에 대한 특칙인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절 제2관(제506조부터 제509조까지)에서는 '자금융통원조' 및 '할부거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할부거래 시 현금가와 할부가격 등 필요적 기재사항, 반환권 및 해제 등에 대한 추가규정이 있음

○ 초기에는 제2관에서 '금융리스계약'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조항은 삭제하고 물건의 유상 이용과 관련하여 '자금융통원조'로 간주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제506조제2항)

- 즉, 어떠한 목적물의 유상 이용에 관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은 ① 소비자가 목적물을 취득할 의무를 지는 약정, ②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목적물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③ 계약 종료 시 목적물에 일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장하는 약정 등이 있는 경우 유상의 자금융통원조로 보고 있음

3. 일본

□ 일본에서는 2000년에 「민법」이나 「상법」 등 민사법에 의해 규율되어 오던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소비자계약)에 적용하기 위한 포괄적 민사특별법인「소비자계약법」이 제정되었음

○ 일반 「민법」이나 「상법」은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과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한다는 관념이 없던 반면, 대량생산과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소비자 계약에 대해서는 정보 불균형

등으로 인해 사적자치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임

○ 동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질과 양, 교섭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체결된 일반적인 '소비자계약'에 대한 취소권, 일정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 무효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1조[68])

- 리스나 렌탈 등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자와 생산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

○ 다만, 일본에는 「소비자계약법」 이외에 개별 영역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인 「특정상거래법」(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할부판매법」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계약법」이 개별영역의 소비자 관련 법률을 총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하지만, 「소비자계약법」의 제정으로 「특정상거래법」 및 「할부판매법」도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졌음[69]

4. 시사점

□ 미국 대부분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통일상법전」에서 금융리스와 독립하여 '소비자리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법이 아직 금융리스 외의 영역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68) 본문의 일본「소비자계약법」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역,『일본 소비자계약법』, 2008의 번역본을 참조함

69) 서희석,「일본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창설」,『고려법학』제7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pp.6~7.

□ 미국 「소비자신용법」이 신용카드나 대부업, 할부거래(소비자리스) 등을 신용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를 염두에 둔 단일법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내법이 소비자를 모두 별개로 파악하고 보호수준에 대해서도 차이를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독일이 물건의 유상 이용에 관한 개념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개념 및 보호 관련 규정을 「민법」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입법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을 집약적으로 정리하고 소비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일본이 리스나 렌탈 등 거래의 유형을 불문하고 사업자와 상대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모아 단일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에 대한 행정적 규율이나 통일성보다 소비자의 편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Ⅴ. 개선방안

1. 리스 관련 법률용어의 정비

□ 법률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명확할 것임

□ 구체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를 리스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되는 '리스'가 「상법」 상 금융리스 외에 운용리스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단순히 '시설대여'라는 용어를 '리스'로 변경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리스'와 「상법」 상 '금융리스' 의 관계가 여전히 불분명할 것임
- 연혁적으로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가 금융리스 외에 운용리스 사업자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반영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및 실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운용리스'의 개념을 법률로 명확화 할 수 있음

□ 용어를 정비하면서 운용리스 대신 '소비자리스'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실무에서 '소비자리스'라는 용어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70]는 현행법상

70) 윤민섭·반도헌, 앞의 글, p.382.

리스에 관한 규정은 양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열위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함

○ 주로 사업자 간에 이용되는 금융리스에 비해 운용리스는 자동차 대여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소비자리스라는 용어가 후술하는 '렌탈'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 견해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각 법에 포함된 법률용어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울 경우, 하나의 법 체계에서라도 리스와 시설대여의 개념과 적용범위 등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스자산' 용어를 정비하고 그에 포함된 운용리스의 개념도 보다 명확히 정비해야 할 것임

- 법 규정에서는 '시설대여'만을 언급하고 하위 규정에서 '리스'가 특별한 설명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시설대여' = '리스' 임을 짐작하여 해석할 수 있을 뿐임
- 따라서 '리스' 용어를 법 규정으로 끌어올리거나, '시설대여'와 '리스'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논란 없는 해석을 위해 필요한 작업일 것임

2.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 정비 및 규제형평성 제고

가. 운용리스와 렌탈 개념의 정비

□ 운용리스와 렌탈의 관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법적 차원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는 양자 모두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먼

저 정부가 양자의 개념과 범주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가 운용리스와 렌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정리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개념의 통합이 필요하고, 다르다고 정리할 경우 각 개념의 정의와 구별기준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정부가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을 통합하고자 할 경우, 운용리스 또는 렌탈 중 한 가지 용어로 정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운용리스로 통합하는 방안이나 렌탈로 통합하는 방안을 택할 경우 각각의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 및 단점을 보유하고 있음

- 운용리스로 통합할 경우 대여상품을 리스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무에서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렌탈 상품의 명칭을 모두 운용리스라는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
- 렌탈로 통합할 경우 소비자들이 렌탈을 리스와 대별하는 상품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대별하고 있고, 대여에 관한 명칭으로 임대차 및 리스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어느 쪽으로 통합하던 간에, 통합내용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회사 명칭 또는 상품명 등 관련 사항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운용리스와 렌탈의 개념과 구별기준을 사업자와 소비자가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신용보호법」 상 consumer lease의 정의와 같이 '렌탈'이 일정한 기간과 비용, 개인 또는 가사상 목적, 동산(또는 생활용

품)의 임대만을 범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소비자신용보호법」상 consumer lease는 “자연인(natural person)이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총 계약관련 비용(total contractual obligation)이 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로 개인, 가족, 가사상 목적을 위해, 리스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이 그 재산을 구매하거나 소유자가 되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개인적인 재산(personal property)의 사용을 위한 리스 또는 위탁(bailment)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나. 자동차 대여사업의 규제형평성 제고 필요

□ 운용리스 및 렌탈에 대한 개념정비와 아울러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규제의 형식과 내용을 정비하여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자동차 운용리스와 장기렌탈 상품의 특징 및 유사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들의 판매주체가 여신전문금융업자와 렌탈사업자로 구별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운용리스와 렌탈 간 개념정립 이전에라도 양 상품의 판매주체, 규제내용,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조정을 통해 양 업체 간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실상 유사한 상품을 전혀 다른 계약인 것처럼 구성하기보다, 동일한 성질의 계약 하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임

3.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강화

□ 리스 및 렌탈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과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음

○ 리스 중 소비자 보호가 문제되는 영역은 사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운용리스 영역이 될 것임

○ 다만, 후술하는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은 리스 관련 용어와 운용리스와 렌탈의 관계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 및 정리가 마쳐진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 특수한 거래의 일종인 '할부거래'나 '방문판매'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운용리스나 렌탈에 관한 내용을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적거래, 사업권유거래 등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형 렌탈도 이러한 특수거래 유형 중 하나로 포섭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71]를 이러한 방안의 예로 들 수 있음

○ 구체적 내용으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운용리스와 렌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계약 서면주의, 청약 철회 및 해제 조건 등에

71) 이도경, 「생활용품 렌탈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14., p.50.

대해 할부거래나 방문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호받도록 하자는 것임

□ 이 방안의 장점은 특수거래를 일괄적으로 규율하기에 용이하며 다른 분야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비교적 간이한 방법으로 법률에 편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임

□ 이 방안의 단점은 리스나 렌탈이 할부거래나 방문판매와는 다른 유형의 비전형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키기 위한 논리적 배경이 미흡하다는 점임

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 소비자와 관련된 리스 및 렌탈을 통합하여 하나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별법 내에서 소비자리스(운용리스와 렌탈을 소비자리스라고 통합할 경우) 또는 운용리스(운용리스로 통합할 경우)를 정의하거나 운용리스 및 렌탈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개념을 통합하지 않을 경우), 개념별로 적용되는 법률관계 및 관련 사업자의 행정적 사항도 규율할 수 있음

□ 이 방안은 리스 및 렌탈 관련 법률을 체계화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즉, 분산된 법률내용을 모아 단일 법률로 집중시킬 수 있고, 소관 관청을 단일화할 수 있으며, 용어의 정비를 위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대신[72] 각 용어별로 구체적인 정의를 두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소비자는 특별법을 통해 리스 및 렌탈에 관한 개념을 쉽게 알 수 있고

72) 물론 기존 내용의 삭제를 위한 개정은 불가피할 것임

계약의 서면주의, 청약관련 사항 등과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이 방안의 단점은 거래유형에 따른 특별법이 또 추가됨에 따라 각 법률 간 체계성, 통일성, 명확성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임

○ 각 특별법에서 동일한 제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차이점이 명백히 논증된 바 없다고 함[73)]

다. 표준약관과 분쟁해결기준 마련

□ 정부는 리스 및 렌탈 표준약관을 추가로 제정하거나 현행 표준약관을 보다 일반화시켜 정수기나 자동차 등 현재 규정된 물품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리스와 렌탈 부문 모두 표준약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한 표준약관 작성은 물품의 다양성, 상이성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추려내어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거래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리스 및 렌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리스 및 렌탈소비자 피해가 물품의 종류나 빈도 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단지 1개 업종(정수기 등 임대업)

73) 김진우, 앞의 글(2013), p.409.

만을 지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대처임

- 이와 관련해서는 표준약관과 마찬가지로 안마의자, 생활가전, 가구 등 피해 다발 주요품목에 대해 추가로 기준을 마련하거나 생활용품 임대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74)]

○ 궁극적으로는 법률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확고하게 소비자 보호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중요한 피해조정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폭넓은 보완이 필요한 것임

라. 검토

□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리스 및 렌탈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도 해외의 추세와 같이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소비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소비자 보호 체계의 변경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즉, 장기적으로 할부거래, 방문판매는 물론 렌탈, 리스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체결되는 대부분의 거래(B2C)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모아 법률로 제정하는 것임

- 제정방향은 ①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일본의 「소비자계약법」과 유사한 형태)을 제정하는 방안, ② 소비자 신용보호를 위한 법(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과 유사한 형태)을 제정하는 방안, ③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모아 「민법」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으로 다양할 것임

74) 이도경, 앞의 글, p.48.

○ 현행법을 정비하여 소비자 보호 규정을 추가하거나 리스나 렌탈 소비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게 될 것이나, 일부 소비자를 위한 단기적인 방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임

□ 해외 각국에서는 소비자 관련 법률들을 묶어 단일 소비자법전을 제정하거나(일본, 프랑스[75]) 소비자 관련 법률을 「민법」에 편입하는 등(독일)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1970년대 이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소비자 관련 특별법이 증가하게 되면서 각 법률 간의 부조화문제가 발생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국은 소비자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는 것임

□ 다만, 통합적인 소비자 보호법 제정 방안은 소비자 보호체계의 큰 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리스나 렌탈소비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통합적인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리스 및 렌탈소비자도 전체적인

75) 프랑스는 1993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소비자관련 여러 특별법을 정비하여 단일의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ommation)」을 제정하였음. 단일화 당시 프랑스에는 사기 및 위조에 대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1905년 8월 1일 법률」을 시작으로 하여, 불법다단계 판매, 허위광고, 통신 및 방문판매, 소비자 신용과 불공정 거래 등 개별 거래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각각의 특별 법률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부터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법률 상호간의 부조화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을 정비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남궁술, 「여러 특별법으로 산재된 소비자법의 단일화 방안」, 한국소비자학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11.27.). 일본은 특별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비자계약 관련 내용을 통합한 것인 반면, 프랑스는 특별법을 모두 통합했다는 차이가 있음

소비자 보호체계 내에서 보다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리스와 렌탈 관련 정의를 통합적인 소비자 보호법에 정비할 수 있을 것인지는 해당 법률의 체계에 따라 달라질 것임

Ⅵ. 결론

□ 일반 소비자들의 리스와 렌탈이 가능해지면서, 대상 물품도 다양해지고 그에 대한 활용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데 반해, 관련 용어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소비자 보호방안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리스와 렌탈은 모두 물건을 임대한다는 유사한 성질이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금융과 임대가 결합되었는지 여부, 결합된 정도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에 대한 정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각의 명칭에 따른 상품이 개발되고 소비자는 그에 따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방안도 충분하지 않게 된 것임

□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첫째, 리스 관련 법률용어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 둘째, 특히 운용리스와 렌탈이 본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규제가 상이한 점, 셋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첫째, 리스 관련 내용은 현재 「상법」의 '금융리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로 각기 규정되어 있어, 양자가 동일한 범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동일하지 않다면 양자의 구체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 둘째, 금융보다는 '물건의 대여'라는 서비스에 중점이 있는 '운용리스'와 '렌탈'의 경우, 양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법적 관점, 학계와 실무의 입장을 검토했을 때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영위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됨

○ 셋째, 리스와 렌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보호수준이 상이해지고, 계약체결이나 분쟁발생 시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이나 분쟁해결기준 등이 미비하거나 부족하여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위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첫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리스 및 시설대여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를 리스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둘째, 리스의 일종인 운용리스와 렌탈은 모두 실무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양 개념을 통합하거나 구별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구별기준을 제시하여 혼란을 줄일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이한 업자의 조건, 소관부처, 상품의 차이 등을 정비하여 이를 단순화하고 공통부분을 집약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할부거래나 방문판매 관련법에 리스나 렌탈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안,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표준약관과 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소비자를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통해 리스와 렌탈소비자도 함께 보호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는 리스 및 렌탈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음

□ 본 보고서를 계기로 향후 리스 및 렌탈의 개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 개념을 정립하는 방안으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겠으나, 실무의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법률용어만을 변경하는 것은 규율대상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실무와 법률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할 가능성이 있을 것임

○ 리스와 렌탈은 특히 실무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 만큼 우선 충분한 현황조사와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법률로 정리하는 수순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단행본 및 학위논문]

가정준, 「미국의 소비자렌탈구매계약법안의 내용 및 시사점」, 『Issue brief on Foreign Law』 2014-5, 한국법제연구원, 2014.

강성모, 「시설대여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 문제」,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2.

고동원,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입법과 정책』 제5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3.

고재종, 「금융리스계약과 그에 관련된 보험의 문제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고형석, 「특수거래법의 민법편입에 관한 연구-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4.

국회 정무위원회, 「시설대여산업육성법안 심사보고서」, 1973.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13.

김동욱,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차량 소유에 따른 법적책임에 대한 고찰」, 『여신금융』 제25호, 여신금융협회, 2011.

김명진, 「리스거래에 관한 법률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재두,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2.

김진우, 「소비자계약법의 현황과 전망」, 『민사법학』 제6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김진우, 「독일 소비자계약법의 동향과 전망」, 『외법논집』 제3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남궁술, 「여러 특별법으로 산재된 소비자법의 단일화 방안」, 한국소비

자학회 제1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노형식, 「대부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13.
모창환·정민지, 「자동차대여사업과 자동차리스업 간의 갈등해소방안」, 『교통정책브리프』2006-2, 한국교통연구원, 2006.
박수혁,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제의 개선방향」, 『헌법학연구』제3집, 한국헌법학회, 1997.
박승준,「생활용품 렌탈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04-12, 한국소비자원, 2004.
박영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의미」, 『법학논총』제27권,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박정기·윤광운, 『미국통일상법전』, 법문사, 2006.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내 편입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법론, 상황관련적 소비자보호관, 실질적 사적자치 개념 등의 모순성에 대하여 」, 『재산법연구』제26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9.
서봉석, 「리스계약의 계약법적 법리구조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제31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희석, 「일본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창설」, 『고려법학』제7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서희석, 「소비자법의 민법전편입 방안 : 한국소비자법의 특징과 이론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법학논총』제31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희석, 「소비자법 민법전편입의 이론적 근거와 방향성: 실질적 사적자치론·소비자계약론의 관점에서」, 『재산법연구』제27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0.
소건영, 「렌탈의 법적 고찰」, 『사법행정』 제50권 제1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양창수, 『독일민법전』, 박영사, 2015.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제41호, 2015.
윤건용, 「국내 리스금융업 발전과정과 시사점」, 『NHERI 리포트』제

245호, 농협경제연구소, 2014.
윤민섭, 「소비자리스(B2C lease)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소비자정책동향』 제45호, 한국소비자원, 2013.
윤민섭·반도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스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8권 제1호,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 2014.
이기종,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통합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을 중심으로」,『홍익법학』 제13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이도경, 「생활용품렌탈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 2014.
이병준, 「다시 한 번: 소비자계약법의 민법 편입에 대하여 : 소비자계약법 편입 반대론자에 대한 재반론」, 『안남법학』 통권 제38호, 무지개문화사, 2012.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13.
정부,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2009.1.5.(의안번호 3408)
조민제, 「법률상 금융리스의 개념에 대한 고찰-대법원 1997.11.28.선고 97다26098 판결을 중심으로-」, 『여신금융』 제30호, 여신금융협회, 2012.
최종구, 「리스 판례의 개관」, 『인권과 정의』 통권 제358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3.
한국렌탈협회, 「국회입법조사처 질의회신」, 2015.
한국법제연구원역, 『일본 소비자계약법』, 2008.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2014.12.24.
황태희·정소민·권오성, 『외국의 소비자 신용법 제도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8.

[보도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시설대여 불공정 약관 시정」보도자료, 2015.5.11.
금융감독원, 「리스거래, 이런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보도자

료, 2014.9.12.
금융감독원, 「리스민원 분석 및 개선사례」 보도자료, 2015.3.31.
금융위원회, 「'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4.12.30.
매일경제, 「리스사 '렌탈금융' 확대」, 1987.5.16일자 기사
연합뉴스, 「생활용품 렌탈업체 성행」, 1991.3.11일자 기사
정미희, 「리스업계, '장기렌탈, 자가용 분류 당연'」, 서울파이낸스, 2005.12.5일자 기사
추승호, 「렌터카업계, 금융사 자동차대여업 진출에 반발」, 연합뉴스, 2005.7.19일자 기사
한국소비자원, 「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덥석 계약했다가 낭패」 보도자료, 2014.7.10.
허재영, 「자동차리스와 장기렌트카, 가격비교와 인기차종은?」, 『이코노믹리뷰』, 2014.9.24일자 기사

[웹사이트]

https://www.crefia.or.kr
http://uscode.house.gov

[NARS----------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73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015.10.28.	조대형
제272호	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5.9.10.	박영원
제271호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정책의 안정적 운영방안	2015.9.10.	심우민
제270호	재정준칙 정립을 통한 재정규율 강화	2015.9.10.	정도영
제269호	대체거래소(ATS) 설립의 쟁점과 개선방향	2015.9.10.	원종현
제268호	통신감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5.9.10.	이재일
제267호	재외국민선거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2015.9.10.	임채진 김종갑
제266호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5.9.10.	장경석
제265호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	2015.9.10.	김주경 김은표 이만우
제264호	산업재해은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향	2015.9.10.	이혜경
제263호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계획: KF-X 사업(보라매사업)	2015.9.10.	형혁규 김예경
제262호	제주 국제학교의 운영 및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2015.9.10.	이덕난 정찬미 유지연
제261호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2015.8.19.	이혜미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6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5.7.29.	권성훈
제259호	김정일 · 김정은 후계체제 비교를 통한 김정은 통치리더십 분석	2015.6.25.	이승열
제258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판정 보류: 내용, 경과와 권고사항	2015.6.18.	조규범
제257호	산업폐수 배출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2015.6.9.	김경민
제256호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법률 개정 과정의 분석과 시사점	2015.6.8.	박충렬
제255호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지원 조례 제정 현황과 개선과제	2015.6.5.	장영주
제254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	2015.6.4.	이창호
제253호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2014.12.31.	배민식
제252호	해외건설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14.12.31.	조주현
제251호	외국 주요 선박사고 조사와 사후 제도개선의 시사점	2014.12.31.	이상팔 배재현
제250호	항만분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2014.12.31.	서영재
제249호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12.31.	조인식
제248호	도시 내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책적 과제	2014.12.31.	장경석
제247호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 하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12.30.	이덕난
제246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4.12.26.	한인상
제245호	우리나라 연금 체계의 현황과 과제	2014.12.24.	원종현
제244호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12.24.	전은경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43호	기존댐 재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4.12.24.	김진수
제242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2014.12.23.	권순조
제241호	한·중·일 농식품의 상대적 비교우위 분석과 당면 과제	2014.12.19.	최세중
제240호	가계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복지정책 방향	2014.11.5.	유재국
제239호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법제화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	2014. 9. 11.	김정주
제238호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2014. 7. 30.	김선화
제237호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2014. 7. 28.	이건묵
제236호	독일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 및 2014년 바이에른 지방선거	2014. 7. 22.	김종갑
제235호	항공사고조사제도의 쟁점과 향후 과제	2014.7.15.	김송주
제234호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4.7.4.	조주은
제233호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7.2.	김남영
제232호	기술영향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14.6.20.	권성훈
제231호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현황과 향후 과제	2014.6.9.	하혜영
제230호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5.27.	김건식
제229호	한류지수의 개선방향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과제	2014.5.9.	김휘정
제228호	2013 칠레 대선 결과와 시사점	2014.5.2.	김영일 이정진
제227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과제	2014.3.18.	박영원 이주연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26호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2014.2.12.	전진영
제225호	2013년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개정내용 및 특징	2014.1.27.	김영일 김종갑
제224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현황과 과제	2013.12.31.	이승현
제223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입법영향분석	2013.12.31.	조주은
제222호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관리현황과 향후 과제	2013.12.31.	하혜영
제221호	군 영창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3.12.31.	형혁규 김선화 김성봉
제220호	재판방송의 쟁점과 과제	2013.12.31.	조규범
제219호	미충족 의료 파악을 위한 미치료율 지표 개선방안	2013.12.31.	김주경
제218호	기초연금 도입 논의와 향후과제	2013.12.31.	원시연
제217호	가계 식품비를 이용한 식품 소비 복지지표의 개발	2013.12.31.	장영주
제216호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12.30.	김경민
제215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12.30.	박주연
제214호	대학평가지표 개선방안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2013.12.30.	조주현
제213호	코넥스시장의 현황 및 개선방향	2013.12.30.	김정주
제21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입법영향 분석	2013.12.27.	유웅조
제211호	주요국의 정치자금 투명성 관리제도	2013.12.26.	이현출 임채진
제210호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의 쟁점과 과제	2013.12.26.	장경석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209호	「최저임금법」 제6조5항[택시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3.12.26.	한인상
제208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13.12.26.	이승현
제207호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2013.12.20.	조형근
제206호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2013.12.19.	박준환
제20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3.12.18.	김유향 심우민
제204호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3.12.18.	조주현 정도영 박준환
제203호	북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평가	2013.12.17.	김갑식
제202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규제영향분석	2013.11.29	김 준
제201호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가 가스 및 전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3.11.15.	유재국
제200호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2013.11.7.	이승현
제199호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013.9.26.	이동영
제198호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	2013.8.21.	김영일 전진영
제197호	법제화 커버드본드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3.8.16.	김효연
제196호	핀란드 초·중등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2013.8.5.	이덕난
제195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3.7.29.	유제범
제194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 -주택의 건설기관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2013.7.24.	이창호
제193호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2013.5.6.	이만우 김영수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92호	수도권규제관련 해외정책 동향과 과제	2013.4.17.	이창호
제191호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심판관제도 개선방안	2013.4.5.	한석현 이재일
제190호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분석 및 자민당 정권의 주요 정책 전망	2013.3.13.	이현출 김유정
제189호	국가 수자원 조사 선진화 방안	2013.2.28.	이기하
제188호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	2013.2.26.	김종갑
제187호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2013.2.20.	박기현
제186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3.2.19.	서동국 허 원
제185호	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 전망	2013.1.18.	김갑식
제184호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3.1.15.	전형진
제18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3.1.14.	박영원
제182호	「국회법」개정안 중 의안자동상정제와 안건신속처리제의 입법영향분석	2013.1.9.	전진영
제181호	「의료법」및「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항의 입법영향 분석	2012.12.31.	김주경
제180호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12.31.	이여진
제17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2.31.	한인상
제178호	MVNO 활성화 현황과 향후 과제	2012.12.31.	이정윤 이승현
제177호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주요쟁점과 과제	2012.12.31.	유의정 이덕난
제176호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2.12.31.	조형근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75호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 방향	2012.12.28.	김휘정
제174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2012.12.27.	이덕난 유지연
제173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효과 분석과 시사점	2012.12.26.	최세중 김봉주
제172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12.12.6.	조주현
제171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2012.12.5.	한인상
제1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1.23.	김 준
제169호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2012.11.13.	김선화
제168호	에너지·환경정책 관련 투자자 ISD 사례연구- 바텐팔 대 독일 정부의 경우	2012.11.8.	최준영
제167호	2012 미국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2012.11.5.	이정진
제166호	「공직선거법」상의 SNS선거규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10.18.	김유향 심우민
제165호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책	2012.10.12.	김주경
제164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법제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 조정을 중심으로	2012.9.14.	이건묵
제163호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2.9.13.	이덕난
제162호	국민연금급여의 국가 지급책임과 연계한 기금운용 개선방향	2012.8.24.	원종현
제161호	선거방송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2.8.22.	김여라
제160호	한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2012.8.8.	김경민
제159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2012.7.13.	이혜미
제158호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2012.6.25.	조주은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57호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	2012.6.15.	유재국
제156호	제18대 국회 입법 활동 분석	2012.6.7.	전진영
제155호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5.31.	김유향 심우민
제154호	국회 원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2012.5.17.	전진영
제153호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2.5.14.	박기현
제152호	스마트TV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2.5.10.	조희정
제151호	IT 생태계 구조변화에 따른 IT 추진 체계 개편 방향	2012.4.25.	조주현 정도영 유재국 김민지 박영원 조희정 심우민
제150호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4.16.	김형진
제149호	식품산업 산업연관분석과 정책방향	2012.4.6.	장영주 정도영 김봉주
제148호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2.3.27.	권순영
제147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2.3.26.	김종갑
제146호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물 유통 규제 개선방안: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를 중심으로	2012.3.23.	조형근
제145호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정책수행체계의 개선방안	2012.3.13.	김휘정
제14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입법영향분석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2012.2.21.	원종현
제143호	북핵 일괄타결 협상안과 6자회담: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2012.1.25.	이승현

현안보고서 제274호

발 간 일	2015년 11월 2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788 · 458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45-001344-14

현안보고서 제274호

리스 및 렌탈 용어와 소비자 보호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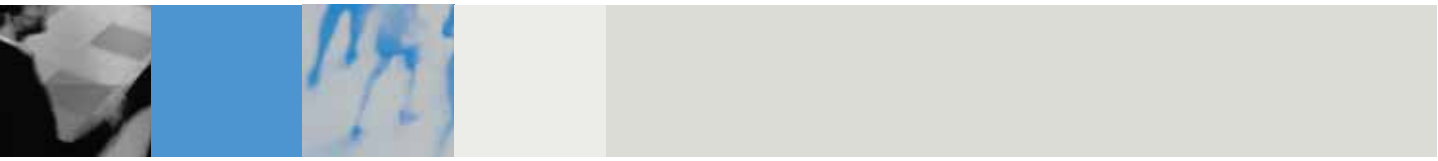

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

ISSN 2005-3215